



김도희 과장/공인회계사
조사2팀 회계제도파트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해설

1. 과점주주의 범위 및 취득세의 부과 이유

지방세기본법 상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가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로 주주는 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포함)주주를 포함합니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일반적으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의 보유는 당해 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라고 보고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하 과점주주가 투자한 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 아닌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 과세표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감가상각 한 경우에는 감가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순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취득 의제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후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평가하고 그 효과를 소급 적용함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유권해석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일(과점주주 성립일)현재 과세대상물건의 총 가액 중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내무부세정 01254-8753, 1987.7.20.).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83누103, 1983.12.13.).

○ 취득세 과세대상 × 과점주주비율 × 2%(중과시 10%) = 납부세액

○ 물건의 장부가액

※ 과점주주비율 :

과점주주의 소유지분금액 / 발행주식의 총액

※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별도 :

차량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당해 법인에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연부취득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연부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12종입니다.

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세율 및 신고·납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일반적인 취득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2%이고,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중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고급선박 등 중 과세 대상이 있으면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율 1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지방세해석 운용매뉴얼 105-3).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 물건지별로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

기 때문에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5.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1) 감자(주식소각)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증자로 인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거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감자로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거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기존 과점주주의 소유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과점주주는 비록 그 소유비율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감자(주식소각) 이외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주식소각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이 상법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6. 합병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7. 지주회사가 되거나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또는 금융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상장폐지유예 중인 법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나 상장폐지유예 중인 법인은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 한 비상장법인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9. 현물출자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 시점에 현물출자 대상인 자산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시점에 과세물건인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과점주주가 추가로 지분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지분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지분 최고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최고지분 증가분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1.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이전 과점주주 지분율보다 증가할 경우에만 증가분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토막 상식

마그레브(Maghreb)

마그레브란 아랍어로 '해가 지는 땅', '서쪽'이라는 뜻의 단어로 리비아·튀니지·알제리·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서부 일대를 총칭하는 말이다. 중동에서 볼 때 이들 나라가 이집트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붙은 명칭으로 이슬람의 동방 세계가 아랍 인과 페르시아 인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데 대하여 서방 세계는 아랍 화한 베르베르 인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음에 기원을 두고 있다. 즉 이슬람의 서방 세계에 속하는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은 자연 환경이 비슷하고, 아랍의 침입에 이은 프랑스의 식민지 활동 등 역사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후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마그레브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이 지역은 석유·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하여 최근 서방 기업업들의 진출이 활발하며, 교통·통신·무역·관광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 체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마그레브 정신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